

예산총칙

202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67,003,199	17,010,096
일반회계	468,343,122	14,050,294
특별회계	98,660,077	2,959,802
공기업특별회계	79,810,285	2,394,30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605,683	468,17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4,204,602	1,926,138
기타특별회계	18,849,792	565,49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54,800	34,64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28,599	15,858
주차장특별회계	3,492,338	104,770
수질개선특별회계	13,674,055	410,222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199,244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7,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